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02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이상식・안호영・김문수

염태영 • 이병진 • 민병덕

김준혁 · 서미화 · 박선원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

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가산점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소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78조의3(가산점 부여) 국토교통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u>
	주된 영업소가 협의 양도되거
	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
	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발
	<u>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u>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
	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
	<u>청할 수 있다.</u>
<u><신 설></u>	제78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익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로 제한할 수 있다.